

동물약품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2008년 2월 22일 세법의 개정으로 동물약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4.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2. 환급대상 기자재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다음의 기자재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2008. 2. 22.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의 사용 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2008. 2. 22. 신설)
- 22. 폐사축처리기(2008. 2. 22. 신설)
- 23. 축사세척기(2008. 2. 22. 신설)
- 24. 카우브러쉬(2008. 2. 22. 신설)
- 25. 축산 약취제거기(2008. 2. 22. 신설)
-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2008. 2. 22. 신설)

※ 환급대상 기자재중 축산업에 해당되는 것만 열거하였음.

3. 환급절차

1) 약품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받되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받는다.

2)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한다.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다.

(1) 직접 환급신청하는 방법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농·어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1년에 1회 통·이장이 확인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

농협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농협,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협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를 매분기말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신청받은 농협에서 환급을 받아 농민에게 교부해 준다.

① 세금계산서

② 통·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음)

4. 환급기간

약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이후 25일 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부당환급에 대한 불이익

농민이 아닌 자가 환급받은 경우 또는 구입한 약품 등을 축산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가공 또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와 일반 3전의 이자해당액을 추징하며, 부당환급 받은 횟수가 2년간 3회 이상이거나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후 2년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의 환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농협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약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환급세액의 수령일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턴 20일 이내에 받게 된다.

8. 시행일

동물약품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구입한 것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